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663

제출연월일: 2020. 10. 6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개정으로 구 소속 국장 인원 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당연직 위원 수 확대(안 제4조제4항)

- 실·국장 등 3명 → 각 국의 국장 4명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지방자치법」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따로 붙임

라. 입법예고: 2020. 8. 28. ~ 2020. 9. 17.(20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사전심사"를 "사전심의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연구용역"을 "연구 용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기술용역"을 "기술 용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기타용역"을 "기타 용역"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용역의 사전심사)"를 "(용역의 사전심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사전심사"를 "사전심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긴급을 요하는"을 "긴급한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(이하"심의회')"를 "(이하 "심의회"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공무원이 아닌"을 "위촉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전임자"를 "전임자 임기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- ④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중구"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 각국의 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에 따른다.
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 하는 의원: 1명
- 2.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: 4명 이내

제6조제3항 전단 중 "통지하여야한다"를 "통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후단 중 "긴급을 요하거나"를 "긴급하거나"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"(간사 등)"을 "(간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예산주무관"을 "예산업무 담당 계장"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기술용역 및 기타용역"을 "기술 용역 및 기타 용역"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"을 "(협조요청)"으로 하고,

28 (제230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의견제출"을 "의견의 제출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용역기간동안"을 "용역기간 동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점검결과"를 "구청장은 1항에 따른 점검결과"로, "일정이행"을 "일정이행"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제1항"을 "구청장은 제1항"으로 한다. 제15조 중 "이내로"를 "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	제1조(목적)
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<u>사</u>	<u>사</u>
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	전심의
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	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구	
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	
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	
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	
말한다.	
1. 시책・제도 등의 개발, 개선,	1
평가분석 등에 관한 <u>연구용역</u>	연구 용역
과 조사, 연구 등 학문분야의	
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	
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	
술 용역	
2. 건설공사의 설계·감리를 제	2
외한 계획, 조사, 자문, 시험,	
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	
필요로 하는 <u>기술용역</u>	<u>기술 용역</u>
3. 제1호, 제2호 및 단순 노무성	3

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성과보고서 등과 같은 용역결 과물을 필요로 하여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

제3조(용역의 사전심사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야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- 제4조(용역심의위원회 설치)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용 역심의위원회(<u>이하"심의회</u> _'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(생 략)
 -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공무원이 아닌</u>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당연직위원은 담당 실·국장 등 3명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가 추천하는 1

기타 용역
제3조(<u>용역의 사전심의</u>)
사전심의
<u>긴급한</u>
제4조(용역심의위원회 설치) ① -
(<u>이하</u> "심의
<u> 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위촉직</u>
④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
중구(이하"중구"라 한다) 소속
공무원 중 각 국의 국장으로 하
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

명을 포함하여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다.
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울산광역 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- 제6조(심의회의 회의) ①・② (생 제6조(심의회의 회의) ①・② (현 략)
 -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 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 의 일시 ·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

<u>의</u>	어느	하	나에	하	당	하님	<u>ニ</u> ノ	나람
<u>중</u> (에서	구:	청장여	[(위곡	촉한	다.	다
만	위촉	직	위원.	의	성별	별구	성비	비율
은	Γοβ	성평	[등기	본	법」	제	213	조에
II	른다 <u>.</u>							

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 하 는 의원: 1명
- 2.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: 4명 이내

5 -	
	<u>전임자 임기</u>
	· <u><후단 삭제></u>

행과 같음)

3				
		통지하여이	<u> 한다</u> .	
<i>7</i>] -	급하거	나		

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8조(간사 등) 심의회의 사무를 제8조(간사) -----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며,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된다. - 예산업무 담당 계장-----제9조(용역심의 대상) 용역심의 제9조(용역심의 대상) ------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 · 연구 용역과 3천만원 이 ----- 기술 용 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역 및 기타 용역----. -----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1. ~ 4. (생 략) 제11조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11조(협조요청) ------요청)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 계기관 •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------<u>의견의 제출</u> --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 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 제13조(용역진행상황의 점검) ① | 제13조(용역진행상황의 점검)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심의대상 용 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에서

정한 용역기간동안 1회 이상 용 기간 동안 -----

역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 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 에 부합하지 않다고 파단될 경 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.

제14조(용역의 평가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용역 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 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, 또 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 하여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15조(평가에 따른 조치) 구청장 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평가후 3년 이내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	②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점검결
	<u>과 일정 이행</u>
제	14조(용역의 평가) ① (현행과
	같음)
	② 구청장은 제1항
제	· 15조(평가에 따른 조치)
∠ 'II	
	이내에
	<u>- ना ना</u>
	•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 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 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라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성	별영향핑	경가 검	토의견	통보	Ч
관리번호	2020A울산중	·구048			
정 책 명	울산광역시 중	주 용역관i	리 및 운영에	관한 조례	
	기관명		울산:	광역시 중구	-
소관부서	부서명		7]	획예산실	
	담당자명	박재건	경 전화	번호	052-290-3073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0년 8월 20				
주요	본 개정안 '울	산광역시 중	구 용역관리	및 운영에 레 그겨치	관한 조례'에 대해 여 성별구분 또는
성별영향평가	고정관념, 성토	별특성, 성별	제1성, 제0조 . 균형 참여,	에 느거하 성별 통계	등 성별에 미치는
내용	영향을 분석하	ト였음. Ⅱ요으 해저 [.]	기구 서치 ㅈ;	네 게저ㅇㄹ	국장 직위 증가에
, -	따른 위원회 '	당연직 위원	수 확대(안 저	4조제4항);	과 알기 쉬운 법령
(기획예산실)	정비 기준에				
	성별영향평가 고정관념, 성년 영향을 분석히 개정의 주요 1	산광역시 중 법 제5조 ; 별특성, 성별 ŀ였음. 내용은 해정;	제1항, 제6조 _ 균형 참여, 기구 설치 조i	및 운영에 에 근거하 [©] 성별 통계	■ 개선의견 관한 조례'에 대해 비 성별구분 또는 등 성별에 미치는 국장 직위 증가에 과 알기 쉬운 법령
		당 내용 정 법령안)	개선 (법령 ⁴		검토사유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 임관)	제 4조 위원회 원은 중구의 "구의회 다)가 명을 구정업 분야별 경험이 사람	(용역심의 설치) ④ 위촉직 위 울산광역시 의회(이하 회"라 한 추천하는 1 포함하여 무 주요 로 학식과 풍부한	제4조(용역 설치) ④ 위원은 울산 의회(이하 한다)가 추천 포함하여 구 분야별로 학 풍부한 사람 청장이 위촉 외촉직 위원 성비율은 「 본법」제212	심의위원회 위촉직 광역시 중구 "구의회"라 한하는 1명을 정업무 주요 식과 경험이 상과 경험이 한다. <u>다만</u> 양성평등기	용역심의위원 회의 위촉직 위 원 구성의 성별 균형참여 조항 추가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2020년 9월	10일 까지			

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0년 09월 01일

울산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

(담당자/연락번호 : 김윤진/052-290-4903)

기획예산실장 귀하

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							
관리번호	2020A울산중구048						
정 책 명	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				
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					시 중구		
소관부서	부서명	기획예산실		산실			
	담당자명	박재경		전화번호	052-290-3073		
	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						
제4조(용역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 하 "구의회"라 한다)기 1 포함하여 구정업무 주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한다. <u>다만, 위촉적</u>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를 른다.	■ 수 용 □일부수용 □불수용	위촉조 구의: 겨 구 풍부한 만, 우	의 위원은 울 회"라 한다)기 정업무 주요 한 사람 중에 기촉직 위원의	원회 설치) ④ 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다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 성별구성비율은 「양성조에 따른다.			

2020년 09월 03일

울산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장

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

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 :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0. 7. 1. 자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」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○ 소 속 : 기획예산실

○ 직 급:지방행정서기

○ 이 름: 박재경

○ 연락처 : (052)290-3073